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경제분석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총리령 제 호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송무담당관·고객지원담당관”을 “송무담당관·고객지원담당관·경제분석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	제18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 2항에 따라 <u>송무담당관 · 고객</u> <u>지원담당관</u> 및 할부거래과장은	② ----- ----- ----- <u>송무담당관 · 고객지</u> <u>원담당관 · 경제분석과장</u> ---- ----- --.
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 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0-4189